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178-01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2019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2019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부정청탁의 금지

- 1 규정 내용 · 6
- 2 관련 판례 · 9

금품등 수수의 금지

- 1 규정 내용 · 26
- 2 관련 판례 · 28
 - ▶ 음식물 관련 판례 · 28
 - ▶ 선물 관련 판례 · 65
 - ▶ 경조사비 관련 판례 · 114
 - ▶ 현금 · 상품권 관련 판례 · 124
 - ▶ 골프 관련 판례 · 164
 - ▶ 향응 · 접대 관련 판례 · 193
 - ▶ 기타 판례 · 205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1 규정 내용 · 212
- 2 관련 판례 · 214



부정 청탁의 금지

- 1 규정 내용
- 2 관련 판례

1

| 규정 내용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부정청탁의 상대방(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 법령을 위반하여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

1. 규정 내용

※ 부정청탁금지조항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규정내용을 보면 단순한 법령위반행위가 부정청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 이에 더하여 조례·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고시, 훈령, 지침 형식의 행정규칙도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법령에 포함됨이 분명하다(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 병합)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도 법령에 해당(청주지방법원 2018.9.13.자 2018과165 결정 참조)

※ (예시)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벌칙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대상
 -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관련 판례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5747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서울 ○○○구 B소재 C초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천에서 탈락한 아동 1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부정청탁하여 정원 외 추가 입학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6.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8과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이 인정된다.

-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그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 나. 위반자는 B 본사 건설사업처 C부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반자의 아들인 D이 2017년 하반기 B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형과정에 합격하자 B 소속 면접위원들에게 청탁하여 아들의 실무면접 전형과정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8. 22:00경 본사 채용담당직원인 E에게 전화로 청탁하여 아들 D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본사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다.
- 다. 그러나 B 감사실에서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 면접위원들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면접번호 유출사실을 발견하고, 면접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면접위원들로부터 위반자의 전화 청탁에 대한 자진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위반자가 아들을 2017. 12. 7.에 예정된 실무면접을 포기시킴으로써 최종합격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반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인 B의 채용담당직원 및 면접위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아들을 면접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번호를 알아 낸 후,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는바,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는 3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정청탁행위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위반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채용 담당자들에게 위반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청탁을 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공기업 부정채용은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위반자에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위반자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반자가 내부 감사를 통한 사실확인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아들의 면접을 포기시킴으로써 최종 합격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행위는 없었던 점, 위반자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본 건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점, 위반자가 ○○○ 및 B에서 약 28년 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2003년 환경부장관상, 2014년 산업부장관상 등을 받는 등 여러 수상실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위반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0,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8

2. 관련 판례

③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1. 위반자 A를,

가. 교사 C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000,000원에 처하고,

나.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000,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2. 위반자 B을,

가.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고,

나. 교사 G에 대한 2016. 12. 27.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G에 대한 2016. 12. 30.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고,

라.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1.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학교법인 H 정관 제37조의10은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I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과에 필기, 서류, 시강(실기), 면접 심사기준안 및 각 단계별 채점자나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되는 위반행위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반자 A는 2016. 12. 26.경 교사 C에게, 2016. 12. 29.경 교사 D에게 각각 J이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J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교사 C은 나중에 “J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② 위반자 B은 2016. 12. 27.경 교사 D, 교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③ 위반자 B은 2016. 12. 30.경 교사 G에게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J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교사들은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영어 교사들이고, 위 교과협의회에서 교과별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이들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위와 같은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다. 위반자들은 제3자인 J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각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반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인정되지 않는 위반행위

가. 교사 E는 위반자들이 “학벌만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역차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부정청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반자들이 교사 E에게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2. 관련 판례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교사 F는 영어 교사가 아니어서 영어과 교과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사 F에 대한 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8.

④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년도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직업, 산불감시원의 보수,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 사 건** 2017과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위반자는 2013. 7. 2.경부터 ○○○으로 근무하다 2016. 12. 31. 퇴직한 자이다.
- 나. 금 ○○○주식회사는 2016. 9. 1.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2016. 10. 17. 주식회사 거○○○를 소방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신고를 하였다.
- 다. ○○○본부는 2016. 5.경 ‘소방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방서는 위 계획에 따라 ‘2016년 2차 소방관련업 지도·점검 운영계획’(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2016. 6.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소방공사현장 등에 대한 표본점검 등 지도·감독을 하게 되었는데, 2016. 11. 1. 감리완공신청 표본검사 결과 ○○○ 주식회사가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 라. 위반자는 2016. 11. 1. 17:30경 ○○○에서 금 ○○○주식회사의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거 ○○○전무이사를 만났고, 같은 날 17:40경 ○○○에 근무하는 신고자를 불러 신고자에게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묵인지시’라 한다).
- 마. 위반자는 2016. 11. 2. 16:20경 ○○○의 ◇◇팀장에게 금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하지시’라

한다).

바. 신고자는 2016. 11. 3. ○○○에게 위반자의 이 사건 묵인지시를 신고하였고 ○○○는 2017. 1. 13. 이 법원에 위반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2. 위반자의 주장 요지

- ① 위반자는 2016. 11. 1. 17:30경 당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여 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 주식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만 하였을 뿐이다.
- ② 위반자가 2016. 11. 2. 16:20경 ○○팀장에게 한 이 사건 취하지시는 ○○○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할 뿐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금 ○○○주식회사 대하여는 현장 완공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는 현장 완공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수립한 ‘소방시설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에서 제시한 표본점검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감독대상을 임의로 확대·추가하여 실시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는 위법한 ○○○의 현장 지도·감독에 의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이 사건 취하지시를 통하여 금 ○○○주식회사의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위법한 현장 지도·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 ④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 ⑤ 따라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위반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거나 ○○팀장에게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함으로써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신고자와 ○○팀장에게 행정단속 또는 조사대상에서 금 ○○○주식회사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 주식회사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반자의 ①, ② 주장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고자는 위반자가 이 사건 당일 신고자에게 ‘봐 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 라는 말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반자는 신고자를 만나기 전 주식회사 거 ○○○의 전무이사를 만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충분히 인지하지 않았다면 신고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반자와 신고자, ○○팀장의 직급 및 관계, 위반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취하지시가 위반자의 단순한 의견개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자의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자의 ③, ④ 주장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반자가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기 직전에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의 당사자인 금 ○○○주식회사의 감리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거 ○○○의 전무이사를 만나고 있었던 점, ㉡ 위반자가 주식회사 거 ○○○의 전무이사를 만나게 된 이유는 위반자의 매제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인 점, ㉢ 위반자는 ○○○의 공신력 유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취하지시 당시 ○○팀장에게 그러한 사유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완공검사가 아닌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서, ○○○소방서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4조의 문언상 위 조항이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되지도 않는 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제1항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46조 제1항은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할 것인 점, ㉮ 위와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운영계획이 반드시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수립한 ‘소방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의 추진계획에서 정한 표본점검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선정기준 또한 지도·감독 대상에 관한 일응의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그 선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관한 일응의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그 선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임의로 추가·확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당시 ○○○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반자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위반자가 위법한 이 사건 운영계획에 따른 ○○○의 지도·감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반자의 허물을 덮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인 점, ㉮ 이 사건 취하지시로 인하여 가장 ‘부담’이 없어지는 자는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금 ○○○주식회사라 할 것이므로, 위반자가 이 사건 취하지시 당시 말하였다는 ‘직원한테 부담안가고’의 ‘직원’은 ○○○ 주식회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점, ㉮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는 ○○○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묵인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의 ③, ④ 주장도 이유 없다.

2. 관련 판례

다. 과태료 부과 범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반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위반자는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는 본인이 기관장으로 있었던 이 사건 운영계획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오히려 ○○○ 공신력을 저해하고 ○○○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금 ○○○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던 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위반자의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로 하여금 실제로 금 ○○○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한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닌 점(이 법원 2016고약 16642호), 위반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위반자의 지위,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경위와 정도 및 그 이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25.

⑥ 청주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8과 1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① 2017. 7. 초순경 B시청 앞마당에서 인사담당관 C에게 7월 인사에서 D를 B시청 도시개발과 산단재생팀장으로, E를 B시청 도시개발과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D은 2017. 7.경 B시청 도시개발과 산단재생팀장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제3자인 D을 위하여 인사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2017. 6. 15. 18:30경 F 소재 G 식당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 I로부터 98,75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아 수수한 사실, 같은 날 J 유흥주점, 닭갈비집, 위반자의 집 근처에서 위 I로부터 함께 4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항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②항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13.

2. 관련 판례

⑦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15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에게 각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들은 2017. 12. 21. 2017년도 하반기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8.

⑧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사 건 2018과10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 ○○○을 과태료 금 8,000,000원에, 위반자 ○○○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은 2017. 10. 17. 12:26경 본인의 아들인 위반자 ○○○로부터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동 시험 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이던 ○○지방해양경찰청 ○○○과 소속 경사 ○○○에게 본인의 아들이 OMR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여 채용시험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자 ○○○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친인 ○○지방해양경찰청 ○○○과장인 위반자 ○○○에게 전화통화 등을 하여 채용시험 감독관에게 부정 청탁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6.

⑨ 청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1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18. 09. 13.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① 2017. 4. 3. 10:10경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② 2017. 5. 20. 18:0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식당, F 유흥주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 H로부터 460,000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을 제공받아 수수한 사실, 2017. 3. 11. 17:30경 청주시 서원구 I 소재 J 식당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K회사 L로부터 37,5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항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②항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



금품등 수수의 금지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 ▶ 음식물 관련 판례
- ▶ 선물 관련 판례
- ▶ 경조사비 관련 판례
- ▶ 현금 · 상품권 관련 판례
- ▶ 골프 관련 판례
- ▶ 향응 · 접대 관련 판례
- ▶ 기타 판례

1

| 규정 내용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수수 금지 금품등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금품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의 신고 및 반환 의무
 -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 약속한 경우 소속기관장(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포함)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 ·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할 의무
-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제재대상 제외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 인도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필요적 면제)

❖ 벌칙

-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2

| 관련 판례 |

❖ 음식물 관련 판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위반자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5. 6. 1.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한다)상 공공기관에 속하는 ○○○공사가 발주한 C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감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위반자는 2016. 10. 1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무관련자인 F(○○○공사 G부장), H(○○○공사 G차장), I(위 공사 수급인인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J(주식회사 B 토목감리원)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어 16:1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위 F, H, I와 음주를 하였으며, 17:3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노래방에서 위 F, I와 음주를 한 후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이 4차에 걸쳐 이어진 식사 및 음주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별지 대금결제

내역과 같이 F 또는 I가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았고, 위반자 몫의 금품등 가액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213,332원이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금품등을 제공받은 점은 과태료 가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으나, 한편 위반자가 2016. 10. 26. I에게 287,000원을 반환한 점, 2016. 11. 7.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과태료 감경 사유를 아울러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18.

2. 관련 판례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1. 위반자를 과태료 금 1,425,800원에 처한다.

(아래 제2위반사실 : 92,000원, 제3위반사실 : 1,333,800원)

2. ① 2017. 7. 18. 11:40경 위반사실과, ② 2017. 7. 26.자 위반사실에 대하여 각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법원에 통보된 위반사실

위반자는 2015. 8. 5.경부터 ○○○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이하 'B지청'이라고 한다)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지역 내에 있는 제조·건설사업장 및 안전보건관련 유관기관·단체에 대해 산재예방지도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감독·단속·행정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바, 직무와 관련하여,

가. 제1위반사실

2017. 7. 18. 11:40~12:40경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부장 F 등 3명과 식사를 하여 위 F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나. 제2위반사실

2017. 7. 18. 18:30~20:20경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I직업전문학교장 J 등 2명과 식사를 하여 위 J로부터 9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다. 제3위반사실

(1) 2017. 7. 25. 17:55경 K아파트 주차장에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M으로부터 389,000원 상당의 통기타를 교부받았다.

(2) 같은 날 18:10~20:00경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M 및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 전무이사 Q와 함께 식사를 하여 위 Q로부터 55,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라. 제4위반사실

2017. 7. 26. 18:50~20:40경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이사 S와 식사를 하여 위 S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위반자의 주장

위반자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과태료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 위반사실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위반자는 B지청 산업안전재해 예방지도과장으로서 산재예방지도과 직원의 복무·지시사항 전달, 해당연도 초 사업주 대상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설명회, 매월 신규착공 건설현장 소장 교육, 기관 평가대비 총괄, 산재예방캠페인 등의 홍보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바, 위반자가 실제 현장인 사업장에 나아가 지도·점검 또는 감독할 기회가 없고, 현장 지도의 경우에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복수로 출장을 나가 점검·지도하므로 위반자가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완화 또는 가중할 수 없는 까닭에 특정사업장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① 제1위반사실의 경우 F이 근무하고 있는 E이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그 금액이 30,000원이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제2위반사실의 경우, J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곳이며, 동석했던 T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T이 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3위반사실의 경우 M이 중고기타가 있으니, 빌려가라고 강권하여 빌리게 된 것으로, 관사에 가서 보니 기타가 새것이어서 곧바로 "기타를 칠 줄도 모르고 배울 계획도 없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말하며 돌려준 것인바, 이는 개인 소유 물건을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금지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Q와의 식사자리는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준 M이 그 보답으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여 응했던 것인데, 그 자리에

2. 관련 판례

위반자 모르게 Q가 일방적으로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 ④ 제4위반사실의 경우 S는 2001년경 의정부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우연히 2015년 말경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서로 수차례 약속 끝에 식사를 하게 된 것으로 개인적인 사고모임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규 및 법리

(1)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외한다.

- (2)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고 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제1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7. 18. 11:30경 위 B지청에서 재해예방캠페인 관련 회의를 마치고 'D'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F 등 3명과 점심식사를 한 후 식사비용 64,000원을 F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반자가 F 등과 식사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B지청은 2017년도 상반기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으나, B지청 소속담당 직원이 4명에 불과하여 캠페인을 벌이기에 그 숫자가 너무 부족한 감이 있어, 실효성이 있는 캠페인을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참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과 관내 각 사업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모임(약칭 'U') 회원들도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참석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2017. 7. 18. 오전에 B지청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서 노동청 B지청 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인 위반자, 안전공단 산업안전부장 및 교육문화부장, 제조업 안전관리전문기관 3개소, 보건관리전문기관 3개소, 작업환경측정기관 4개소, 'U'회원 3명 등 총 17명이 참석하였고 이 회의는 11:30경 종료되었으나, B지청에서 점심은 제공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자 위 회의에 참석했던 U의 부회장 F이 위반자에게 식사를 제의했고, 다른 회의참석자인 U 회장 V, U회원 W도 그 식사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를 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비록 F이 속한 E이 B지청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2. 관련 판례

산재예방지도과의 관리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위 F 등의 위반자를 만나게 된 것은 B지청의 회의참석 요청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고, 어떤 청탁이나 로비활동을 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었던 점, ② 위 회의가 끝난 시간이 11:30경으로 점심시간에 근접한 시점이어서 참석자들도 어차피 점심식사를 해야 했었던 점, ③ 당시 E이 위반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독이나 시정지시 대상에 올라있지도 않았던 점, ④ 식사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들도 일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어떤 청탁이 오고가지 않았던 점(사후에 위반자가 식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 F이 연장자로서 식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수궁하기 어려운 행동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더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식사자리는 위반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사교, 의례에 따른 식사자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다(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위반자가 제공받은 식사는 16,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에서 본 판단에 따르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단서에서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2) 제2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위반자가 2017. 7. 18. 18:00경 부하직원인 T의 차량에 탑승하여 위 ‘H’식당으로 이동한 사실, 위 식당에서 J와 식사를 하고, 그 비용 138,000원을 J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T은 B지청 B고용센터 기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J는 I직업전문학교장으로서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함께 식사를 했던 위 T 팀장은 기업지원팀 팀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 계획 수립 문서에는 J가 교장으로 있는 I직업전문학교가 그 점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J와 T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비록 J와 위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사적으로

친분을 유지한 사이이고, 위반자와 J 사이에는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교자리에 굳이 J와 친분도 없는 T를 동석시킬 이유가 궁색하다는 점, 위반자는 T의 선배로서 T를 이 사건 식사자리에 데려오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어, T의 관련업무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와의 관계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T의 경우 위반자가 ‘밥 한번 먹자’고 하여 따라갔다가 위 식사자리에서 J와 동석하게 된 것이고, 식사자리 처음부터 그리고 식사도중에도 그와 같은 자리가 불편하다고 위반자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직장선배인 위반자가 식사대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T에게 청탁금지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위반자가 수수한 금품등은 식사대금 총 138,000원의 1/3인 46,000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함이 타당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의 경위, 그 금액, 사후 반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수수금품액의 2배에 해당하는 9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제3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가) M으로부터 통기타를 수수한 행위

위반자가 2017. 7. 27. 17:55경 K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청소를 하던 중 L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통기타를 받은 사실, 위 통기타는 M이 구입한 것으로 그 가격은 38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M은 ‘L’이라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사람인데,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으로서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부터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은 기관으로 위반자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위 통기타는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고, 곧바로

2. 관련 판례

M에게 저녁식사 후 커피숍에서 기타를 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통기타는 신상품으로 상표태그(tag)가 그대로 달려 있는 새 기타였고, 커피를 마신 후 관사까지 데려다 준 M에게 기타를 반환하지도 않은 점, ② 통기타를 교부받은 지 이틀 만에 굳이 새벽에 M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시간 전에 기타를 반환하는 것도 빌린 것을 반환하는 사람의 행위로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는 위반자에게 매우 급하게 통기타를 돌려주어야 할 사정이 생긴 것에 기인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 까닭은 통기타를 수수한 다음날인 2017. 7. 26. 20:40경 고용노동청 감사관실에서 위반자에 대하여 암행감찰을 실시하던 중 위반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위반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자신에 대한 어떤 감찰이 진행되고 있음을 눈치 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M은 2017. 8. 2.자 자필확인서에서 위 통기타는 악기사에서 구입하여 자신이 쓰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태그가 그대로 달려있는 새기타였다는 점에서 위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M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위반자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반자는 M에게 통기타를 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과태료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통기타 반환 행위는 위반자에 대한 감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위반자가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미연의 처벌을 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즉시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힘들어 위반자의 반환행위를 두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과태료 처벌 예외사유로서의 '반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이하 다른 위반사실에서의 위반자의 반환주장에 대한 판단도 같다).

위 통기타의 가격이 389,000원에 이르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한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의 경위, 그 금액, 사후 반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수수금품액의 3배에 해당하는 1,16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나) Q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행위

위반자가 위 K아파트 주차장에서 M의 차량에 탑승하여 'O'이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P회사 Q와 함께 3명이 저녁식사를 하고, 그 식사비용 167,000원을 Q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Q는 M이 운영하는 회사의 안전관리 대행 회사인 'P'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고, 위 회사는 산업재해예방 관련으로 산재예방지도과로부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사업장인바, 역시 위반자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금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처벌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Q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 대가 중 3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인 24,000원을 2017. 7. 29. 10:51경 반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자의에 의한 반환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의 처벌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식사대금으로 제공받은 금품등의 액수가 55,600원에 이르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한바, 그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의 경위, 그 금액, 사후 반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수수금품액의 3배에 해당하는 166,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제4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위반자가 2017. 7. 26. 18:50경 위 'H'식당에서 R 이사 S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식사비용 70,000원을 S가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반자와 S가 이처럼 식사를 하게 된 경위는, 위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것은 위반자가 2001년경 고용노동청 ○○○지청 산업안전과에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사업장을 양주에 둔 R의 대리 직급의 S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인데, 당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 이후 위반자가 전출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고, 2015년 말경 B의 한 강연회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연락을 이었던 것인데, 이때 R가 B로 사업장이 이전되었으며 S도 B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언제 한번 식사를 하자는 여러 차례의 말 끝에 위 일시 경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더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및 앞서본 법리를 고려하면 이

2. 관련 판례

부분 위반행위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① S는 R에서 물품구매파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위반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식사자리에서 위반자의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R의 산재예방업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요구사항 혹은 금품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③ 식사자리 이전에 두 사람이 B에서 R의 산재업무 등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담당할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식사를 마치고 위반자와 S가 서로 결제를 하려고 옥신각신하던 중 식당 주인이 S의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취득한 음식물 금액이 35,000원인데, 위 식당이 한우를 비롯한 고기를 파는 식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금액은 통상의 식사비용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반자와 S의 식사자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의 친목 자리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에 통보된 바와 같이 이 부분 위반사실이 위반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제4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위반자의 각 위반사실 중 제2위반사실과 제3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기로 하고, 제1위반사실과 제4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3.

③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2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18. 09. 18.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B시의회 사무과장으로서 2017. 3. 22. 12:00경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E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33,812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 위반자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반자는 B시의회 사무과장과 E조합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B시의회 사무과의 제반 업무, E조합원의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이 B시의회 조례 재·개정을 통한 건폐율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시의회 사무과장과 E조합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반자는 당시 위 식당에서 총 22명이 식사를 하였고, 식사대금으로 633,000원이 한 번에 결제되었으므로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28,772원으로 3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득이 전체 식사대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인데, 당시 위 식당의 방에서는 위반자, B시의원, E조합의 조합장 및 간부 16명이, 위 식당 홀에서는 B시의원 수행원들과 E조합의 팀장 및 직원 6명이 따로 식사를 하였고, 방과 홀에서 주문했던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서로 달랐던 점, 위반자는 방에서 주문한 고기와 술을 홀에 있던 사람들도 나누어 먹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참석자들의 지위, 방과 홀에서 주문한 음식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당 방에서 식사를 한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위 식당 홀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의 식사대금과는

2. 관련 판례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설령 위반자가 E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음식물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반자는 당시 제공받은 음식물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의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위 및 가액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0.

④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3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18. 11. 01.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6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B구청 주차관리과 ○○○으로서 2017. 7. 27. 하남시 C 소재 D 식당에서 E사업조합의 이사장 F과 임직원 11명, 위 조합에 소속된 B구 지역협의회 회원 8명이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직무관련성 있는 위 F으로부터 28,571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로서 3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식사는 본래 조합직원과 지역협의회 회원 사이의 회식자리인 점, 위반자가 관내 자동차정비업소 지도·점검,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위반자가 당시 참석자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로 평가하기 어렵고, 이는 위반자가 단속업무시 위 조합의 업무협조를 받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위반행위의 경위, 음식물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8.

⑤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로부터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현장대리인 ○○○가 2016. 10. 11.경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 ○○○감리업체 감리단장인 ○○○과 식사 등을 하면서 비용 479,164원을 부담함으로써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반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 8. 25.경 법무법인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변호사를 초빙하여 위 ○○○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준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점, ② 2016. 9.경 위반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금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위반자에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해설집을 배포한 점, ③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개별 공사현장에도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지원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위 ○○○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8.

⑥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9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은 ○○신축공사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는 ○○○에 근무하면서 위 공사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다.
- 나. ○○○은 ○○○에게, 2017. 8. 16. 19:00경 ○○○에 있는 ‘○○○’일식집에서 술과 음식 등 60,500원 상당을, 8. 17. 00:00경 ‘○○○’라는 술집에서 양주 등 56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 다. ○○○은 또한 ○○○에게, 2017. 8. 31. 19:00경 ○○○에 있는 ‘○○○’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등 98,000원 상당을, 같은 날 22:02경 위 ○○○에서 양주 등 56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의 종업원인 ○○○은 위반자의 업무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인 ○○○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위반자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교육을 시행하였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상급자인 현장소장 ○○○와 상의하여 ○○○에게 위와 같이 접대행위를 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반자의 법인카드로 일부 식사대금 등을 결제한

2. 관련 판례

점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뒤 주장은 이유 없다.

위반자는 ○○○의 사실상 강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 위 공사현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바람에 현장소장 등에 대하여 과태료와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 위반행위를 강요하였다거나 ○○○이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은 ○○○에게 먼저 식사자리를 제의해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위반자는 ○○○가 ○○○과 상의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 및 위반자에 대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 신고를 ○○○이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6.

⑦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B

C

주 문 위반자 ○○○에게 과태료 2,226,999원, 위반자 ○○○에게 과태료 3,838,998원, 위반자 ○○○에게 과태료 6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1) 위반자 ○○○는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7. 7. 14., 2017. 7. 17., 2017. 7. 26. 직무관련자인 ○○○사무소 사무장 ○○○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2,333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2) 위반자 ○○○는 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항 보따리상 등이 반입하는 휴대품의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각 일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직무관련자인 위반자 ○○○에게 합계 742,333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을 제공하고, 직무관련자인 ○○○세관 공무원 ○○○에게 467,333원 상당의 식사,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고, 직무관련자인 ○○○세관 ○○○소속 공무원 ○○○에게 70,000원 상당의 식사 및 금품을 제공한 사실, (3) 위반자 ○○○은 한국-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으로서 2017. 7. 14. 직무관련자인 ○○○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위반자 ○○○에 대하여), 제23조 제5항 제3호(위반자 ○○○, ○○○, ○○○에 대하여)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기록상 인정되는 위반행위의 경위,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본 건 위반행위로 위반자 ○○○는 징계의결로 공무원직에서 해임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금액을 결정한다.

2. 관련 판례

한편 위반자 ○○○ 사이의 2017. 7. 14.자 36,000원 상당의 노래방비용 및 2017. 7. 28.자 50,000원 상당의 오디즘 선물 부분은 둘 사이의 평소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8. 9. 14.

⑧ 대전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3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4. D
5. E

주 문 위반자 A, B, C, D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고, 위반자 E을 과태료 금 13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위반자 A, B, C, D에 대하여**

위 위반자들은 위반자 E이 아래와 같이 2017. 1. 4. 18:20경 춘천시에 있는 F 식당에서 식비를 계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를 인지하게 된 직후 위반자 A이 위반자 E에게 식비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위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2. 위반자 E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E은 ○○○공사 ○○○본부 소속 G지사장인바, 2017. 1. 4. 18:20경 춘천시에 있는 F 식당에서 ○○○공사 강원본부 및 강원본부 소속 H, I, J, K 지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나온 위반자 A, B, C, D의 식비 61,000원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자 A, B, C, D이 위반자 E이 소속되어 있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이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과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수수 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반자 E을 과태료 130,000원에 처하기로 한다.

2. 관련 판례

위반자 E은 위와 같은 식비 계산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위반자 E과 나머지 위반자들 사이에는 협업 등의 업무협조관계가 없는 점, 위반자 E이 소속되어 있던 지사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직접 지도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사 강원본부 및 그 소속지사가 ○○○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 E의 식비 계산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단순히 사교적인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반자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5.

⑨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13,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언론사 직원 2명과 함께 2017. 6. 6. 파주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그들의 식대 1인당 58,000원 합계 116,000원을 결제하고, 그들의 대리운전비 1인당 27,500원 합계 55,00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총 171,00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관련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본 건 위반행위의 내용,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금액을 결정한다.

2018. 9. 19.

⑩ 수원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7과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6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위반자는 ○○○공사의 B부 부장으로서, ○○○공사가 발주한 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괄하고 있었다.
- 나. 위반자는 2016. 10. 11. 16: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직무관련자인 F(○○○공사 B부 차장), G(이 사건 공사 책임감리용역 감리단장), H(이 사건 공사 수급인인 I 주식회사 현장대리인)와 음주를 하였으며, 17:3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위 G, H와 음주를 한 후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 다. 위와 같은 식사 및 음주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별지 대금결제 내역과 같이 H가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았고, 위반자 몫의 금품등 가액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190,832원이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제공받은 점은 과태료 가중사유로 고려할 수 있으나, 한편 위반자가 2016. 10. 26. H에게 286,250원을 반환한 점, 206. 11. 7.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과태료 감경 사유를 아울러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6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1.

⑪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사 건 2017과 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18. 12. 24.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6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자동차 관리사업체(자동차 정비업체, 매매업체)의 등록, 지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9급 공무원으로서, 2017. 7. 27. 21:27경 하남시 소재 ‘○○○’이라는 식당에서 이사장, 임직원 및 조합원 총 21명과 함께 60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사실, 위 조합의 이사장이 조합 법인카드로 위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자는 위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등록, 지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식사를 통해 원활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반자는 위 조합의 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금품 등도 수수해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반자가 위 식사를 통해 28,571원 상당의 식비를 수수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담당팀장의 권유로 식당에 가게 되었고, 위 모임에 참가했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니며, 오히려 조합원의 협조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자는 위 조합의 구성원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직무관련자가 위반자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공문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상호간에 의견 교류를 할 수 있고, 반드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위 법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일부의 사람과 친해지게 됨에 따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과 친분이

없는 다른 직무관련자가 보았을 때 공무원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인 점, 식사장소가 하남시인 것으로 보았을 때 위반자로서도 위 모임이 공적 모임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참석을 거절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위반자가 식사 장소에 가서야 참석하면 안 되는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위반자는 자신의 식비를 개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충분히 위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⑫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인바, 2017. 9. 21. 경남 ○○○군 C에 있는 'D'에서 E 소속 직업상담원 F, G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자는 위 직업상담원들이 포상금을 받은 돈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고, 포상금은 팀 전체의 노력으로 지급받는 돈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직업상담원들이 취업알선우수자로 선발되어 지급받은 포상금은 개인의 계좌로 지급된 점, 기존에 직업상담원들이 받은 포상금을 팀장이 걷어 동료직원들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호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위 직업상담원들이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적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이자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위원장으로써 2017. 10. 18. 진주시 H 'I'에서 E 취업지원명예상담원 J로부터 27,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자는, 자신이 J의 무기 계약직 전환에 개입을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고, J가 수차례 요청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일 뿐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반자는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위원장이었는바, 전환심사위원회는 위 J의 정규직 전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으로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 2017. 10. 1. J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위반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0. 18. J로부터 위와 같이 식사를 제공받은 점, 위반자가 위와 같이 식사를 제공받을 당시 전환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K도 함께 있었던 점, J는 식사를 제공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기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J로부터 위와 같이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태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반자의 지위,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 등 위반의 경위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4.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11.

⑬ 대전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위반 사실

위반자는 2016. 10. 11. 16: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공직유관단체 직원인 D, E, F과 음주를 하고, 이어 17:3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위 D, F과 음주를 한 후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비용 479,164원(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음)을 부담함으로써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반자는 I 건설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의 J이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D, E은 위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사의 직원들이며 F은 위 건설공사의 감리업체 K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점, ② 수수된 금품 등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 시간적으로 근접하기는 하나 3회에 걸쳐 금품 등이 제공된 점, ③ 금품 등이 수수된 동기 및 그 경위, ④ 수수된 금품 등이 이후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14.

⑭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금 8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소속의 실업급여팀장 및 직업능력개발팀장인바, 2017. 10. 18. C에 있는 ‘D식당’에서 B고용센터 취업지원명예상담원 E로부터 27,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지청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사위원회 위원이었는바, 전환심사위원회는 2017. 9. 25. 위 E의 정규직 전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으로 심사하였고, 그 결과 2017. 10. 1. E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 위반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0. 18. 전환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F와 함께 E로부터 위와 같이 1인당 27,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식사를 제공받은 시기가 위 심사일로부터 상당히 근접한 점, E가 식사를 제공하게 된 동기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인사치레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와 위반자의 인적 관계(상하급자로서 별다른 친분이 없어 보인다), 함께 식사를 한 사람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제공받은 식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의 소정의 수수가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과태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반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다.

그렇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7.

⑮ 울산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8과 9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7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위반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기업으로 지정된 ○○○ 주식회사의 ○○○원자력본부 ○○○발전소 운영실의 ○○○팀장으로 발전소 직원들의 방사선 안전교육업무, 방사성 폐기물처리업무, 방사선 측정 및 제염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원자력발전설비의 예방·예측정비, 고장정비, 경상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사이며, ○○○은 위 ○○○주식회사의 ○○○사업처 총무팀의 팀장으로 계약, 회계,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나. ○○○은 위반자의 소개로 2017. 12.경 영천 ○○○에 있는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었다.
- 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위반자는 ○○○(○○○주식회사의 납품업체 이사인 ○○○도 동승)으로부터 2017. 12.17. 울산 남구 ○○○에 있는 ‘○○○’식당에서 280,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이후 같은 동에 있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2,2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접대부 서비스를 대접받았다.
- 라. ○○○주식회사 ○○○은 위반자가 위와 같이 ○○○으로부터 식사, 주류,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위배되는 금품 수수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이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2. 관련 판례

2. 위반자의 주장

위반자는, ㉠ ○○○은 ○○○주식회사의 사무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반자는 ○○○주식회사의 기술직 업무, 그중에서도 방사선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 실제 위반자의 방사성폐기물처리업무, 방사선 측정 및 제염 업무는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는 점, ㉢ ○○○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자가 관리하는 방사선안전구역에 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자로부터 직접 방사선안전교육을 받을 일이 없는 점, ㉣ 위반자와 ○○○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계약이나 구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 ○○○주식회사의 작업지시나 감독을 받는 것은 ○○○주식회사의 기술안전팀이고 ○○○이 소속되어 있는 총무팀은 직접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점, ㉥ ○○○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에 작업 지시·감독을 하는 부서는 위반자가 소속되어 있는 방사선안전팀이 아니라 정비기술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으로부터 식사, 주류,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위반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 가.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나.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 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 15470 판결 등 참조).

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4.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반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의 ○○○원자력본부 ○○○발전소 운영실과 ○○○이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의 ○○○사업처는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위반자와 ○○○은 동향 선·후배 관계로 각자의 직위와 업무에 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이는 점, ㉡ ○○○주식회사의 주 업무가 원자력발전설비의 정비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범위가 반드시 기계설비의 정비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반자가 담당하는 방사선안전관리 및 방사성물질 관리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비록 ○○○이 ○○○주식회사의 방사선안전구역에 직접 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총무과 팀장으로서 관리하는 ○○○주식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매일 위 방사선안전구역에 출입하면서 위반자의 관리 하에 방사선작업허가, 안전교육 등을 받고 있는 점,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발전시설정비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계약 유지 등은 직접적인 사무담당부서인 기술안전팀, 정비기술팀 등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외부계약, 협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소속의 총무과 역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위반자가 ○○○등과 실제 협업하거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등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반자는 ○○○주식회사의 방사선안전 및 방사성물질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별전설비정비 업무 관련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보좌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는

2. 관련 판례

것으로 보이는 점, ㉠ ○○○주식회사의 방사선안전 및 방사성물질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발전설비정비 업무가 위반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더라도 위반자가 담당하는 방사선안전 및 방사성물질 등 관리 업무는 위 발전설비정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반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에 따른 세력을 기초로 발전설비정비 업무의 공정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접대행위, 나아가 위반자와 ○○○ 사이의 관계에 힘입어 ○○○이 소속된 ○○○주식회사가 향후 ○○○주식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부당한 특혜를 받고 이에 위반자가 기여할 수 있는 위험성, 즉 위반자의 향응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위험성은 충분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 위반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반자가 ○○○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주류, 접대부서비스 등 합계 2,540,000원 상당의 향응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할 정도로 과다한 점 그 밖에 위반자와 ○○○의 담당 업무의 내용, 둘 사이의 관계, 향응을 제공받은 시기, 향응의 내역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반자가 ○○○으로부터 제공받은 합계 2,540,000원(1인당 846,000원) 상당의 식사, 주류, 접대부서비스 등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반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위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위반자가 제공받은 합계 2,540,000원(1인당 846,000) 상당의 향응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 규정된 음식물비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5. 결론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액은 위반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의 2배인 1,692,000원(=846,000×2) 내지 5배인 4,230,000원(=846,000×5)의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고의의 내용, 위반행위 이후의 사정, 위반자의 나이, 경력, 지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최하한에 가까운 1,7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28.

⑯ 창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7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사 부산경남본부 경영인사처에서 자산임대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공사 자산인 ‘부산시 ○○○구 ○○○동 ○○○-○○○번지’ 임대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6. 30. 부산시 ○○○구 ‘B수산’에서 직무관련자(임차인) C을 만나 식사를 한 후, 직무관련자가 식대 7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위반자는 “각자 본인 음식 값을 내자”고 반환의사를 지체 없이 나타냈으나 해당 결제를 즉시 취소하지는 않았고, 5일 후인 2017. 7. 5. 모바일 뱅크를 통해 식사비용 35,000원을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3

2. 관련 판례

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

사 건 2016과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12,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지방법원 ○○○지원 관내 변호사로서 2016. 10. 30. 15:52경 군산시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D 판사가 가족(남편, 자녀 1명)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합계액 3만원 중 2만 8천원을 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5.

❖ 선물 관련 판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75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소명된다.

가. 위반자는 B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미술사학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한국근현대사 등을 강의하고 관련 논문을 지도·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B대학교 총장은 2018. 1. 18. 이 법원에, 위반자의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 중 43명은 위반자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각 1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각출하여, 2017. 5. 14.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집 C에서 위반자를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위반자는 위 기념행사에서 위 학생들로부터 스카프 선물, 케이크,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위 학생들 중 7명은 위반자로부터 석·박사 학위 논문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자들(이하 ‘이 사건 학생들’이라한다)로서 이들을 기여한 부분은 스카프 선물 356,865원과 식사 등 음식물 16,105원 합계 372,970원 상당이다.

이로써 위반자는 직무관련자인 이 사건 학생들로부터 372,970원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2. 관련 판례

2.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교직원 역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위 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반자는 B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로서 2017. 5. 14. 본인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학생들로부터 356,865원 상당의 선물과 16,105원 상당의 음식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이 사건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심사한 적이 없으며 지도·심사할 예정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생들은 모두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로서 위 대학원 부교수인 위반자로부터 지도·평가를 받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위반자로부터 논문 지도·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그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위반자의 환갑 및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지 위반자가 이를 요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위반자는 학생들이 각출한 돈을 돌려준 점, 기타 위반자가 제공받은 금품의 종류와 가액, 그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가액(372,970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7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10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6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위반자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는 ○○○으로부터 “C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위반자는 2017. 2. 24.경 ○○○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후 2017. 3. 15.경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용역계약의 감독기관인 ○○○ ○○○실장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사무소에 ○○○실장을 수신자로 한 편지와 25,000원 상당의 구움선물세트를 두고 갔다.
- 다. ○○○부 직원이 2017. 3. 16. 09:30경 위 편지와 물품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실장은 같은 날 직원을 통하여 위 물품을 소포로 반환하도록 한 후 소속기관장인 ○○○장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위 물품 수령 및 반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2. 관련 판례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제5항).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선물세트와 함께 편지를 두고 갔는데 그 편지에 “○○○을 통해 진행하는 ‘C 구축사업’에 관하여 위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을 연장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가 위 편지의 수신자인 ○○○실장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위반자가 제공한 금원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반자는 용역계약을 해지 당하자 ○○○실장을 비롯하여 ○○○정책관 등 ○○○부 담당자들에게 여러 차례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역계약을 연장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점, ② ○○○실장은 위반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에 대하여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③ 위반자가 평소 ○○○실장과 업무 협의 등을 위하여 교류하던 사이가 아니었고, 2017. 3. 15.경 ○○○실장을 일방적으로 만나려 했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자 위와 같이 물품과 편지를 두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는 자신의 민원 청탁을 위한 목적으로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반자가 제공한 물품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물품 제공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그 가액이 비록 25,0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위반자의 물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평소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던 공무원에게 민원 해결을 부탁하면서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그 물품 가액이 25,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위반자가 물품을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4.

③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7과 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8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위반자는 B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C는 위 학교 호텔외식조리과 조교수로 위반자를 지도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다.
- 나. 위반자 등 9인의 위 학교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은 2016. 10. 10. 18:00경 위 학교 D건물 지하 1층 실습실에서 C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30,000원 내지 40,000원을 각출하여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과 30,000원 상당의 케이크, 10,000원 상당의 꽃다발을 구입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 다. C는 그 자리에서 위반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위 상품권, 케이크, 꽃다발을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C에게 합계 340,000원 상당의 상품권, 케이크 및 꽃다발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C는 B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C가 위반자를 지도·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C에게 위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허용되는 가액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위반자가 제공한 금액이 위 가액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위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반자 등 9인의 학생들을 모두 B대학교의 요리경연대회출전 동아리 구성원들이고 C는 위 동아리 지도교수로서 위반자 등은 동아리 지도교수인 C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와 같은 생일파티를 기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일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아니한 시점이었고, 당시 만 20세로 대학교 1학년 학생에 불과했던 위반자로서는 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반자에 부과할 과태료 금액은 과태료의 최저금액에 근접한 8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8.

④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1. 9.부터 2017. 5. 18.까지 B시청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노선팀에서 시내버스·공항버스·마을버스의 노선조정, 인·허가, 증·감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2016. 2.경부터 2017. 1. 20.까지 직무관련업체인 C회사 D 대표가 택배로 보낸 합계 800,000원 상당의 와인 및 갈비세트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20

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14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18. 07. 25.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7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단의 직원으로 같은 공단 소속 상급자인 B에게 2016. 12. 30. 퇴직선물로 C과 함께 110만 원 상당 황금열쇠를 선물하고(위반자 부담 부분 50만 원), 2016. 11. 15. 및 2017. 3. 1. 2회에 걸쳐 하급자인 C으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위반자가 직속 부하직원이나 지인들과 2차례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행경비 중 항공비만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적게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하직원들이 모두가 여행경비가 저렴했다고 진술하는 점, 부하직원 뿐만 아니라 위반자의 지인들도 함께 했던 여행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반자가 여행사 대표자와 지인으로 경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 위반사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위반자는 여러 사정을 들어 과태료의 감액을 구하는 듯하나 약식결정에서 법률상 최저한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된 이상 더 감액의 여지가 없다.

2018. 10. 22.

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사 건 2017과 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99,000원에 처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기록에 의하면, ○○○의 직원인 위반자가 2017. 1. 24.경 국립대학교인 ○○○의 인쇄정보공학과 ○○○ 교수에게 49,500원 상당의 홍삼음료를 제공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음식물의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위반자는 위반자가 ○○○ 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반자와 ○○○ 교수를 알게 된 과정, 이 사건 위반사실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의 사이의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반자에게 9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2.

⑦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사 건 2017과 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20,000원에 처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공립인 ○○○의 학교운영위원장인 사실, 위반자가 2017. 5. 15.경 16만 원 상당의 떡을 ○○○교무실 옆 회의실에 놓고 간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음식물의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반자에게 3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2.

⑧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위 반 자**
1. A
 2. B
 3. C
 4. D
 5. E
 6. F

주 문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각 5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들이 ○○○소속 직원인 사실, 위반자들을 포함한 위 보호소 소속 전 직원 40명이 각 1만 5,000원씩 각출하여 60만 원을 모은 사실, 위와 같이 모은 60만 원으로 가디건과 한우선물세트를 구입하여 2017. 9. 16. 소장님 ○○○에게 이를 제공한 사실이 소명 되는바, ○○○은 청탁금지법 제11조에서 정한 공무수행사인이라 할 것이므로, 위반자들은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가디건과 한우선물세트의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의 사이의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2. 관련 판례

종류와 가액,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반자들의 각출한 금액,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위반자(아동보호1팀의 김○○)가 다른 법원에서 부과 받은 과태료의 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반자들에게 각 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21.

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중재원에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으로서 2018. 11. 22.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분쟁 사건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선물을 제공한 점 등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자의 위반 동기,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하기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28.

⑩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결정

사 건 2018과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 A은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고, 위반자 B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위반자 A

위반자는 C군청 환경축산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9.말경 D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E 현장소장 F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E이 공사감독관인 G으로부터 준공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위 F가 위반자의 주거지로 택배발송한 시가 12만원 상당의 영광굴비세트를 수수함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통보되었다.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반자가 택배 발송한 영광굴비세트를 수수하였다는 위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위반자 B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C군청 환경축산과 환경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9.말경 D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E 현장소장 F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E이 공사감독관인 G으로부터 준공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위 F가 위반자의 주거지로 택배발송한 시가 12만원 상당의 영광굴비세트를 수수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가 물건을 제공받은 경위 및 가액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3.

⑪ 전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5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주 문 1. 위반자 A, B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2. 위반자 C을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군 D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E회의 사무국장인 위반자 C은 2017. 2. 1. 18:30경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군 D과장 A 및 ○○군 D과 F팀장인 B에게 전북 ○○군 G 소재 'H'에서 소고기, 소주 등 각 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위 공직자들은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반자 C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금품등 가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다만 위반자 A, B에 대하여는 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17. 7. 4.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

⑫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사 건 2017과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원에 처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6. 9. 30.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10,000원 상당의 비타500 한 상자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19.

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사 건 2017과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산업재해근로자로 2017. 1. 24. ○○○공단 ○○○지사 소속 B 담당 직원에게 50,000원 상당의 한과선물세트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19.

⑭ 부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25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42,000원에 처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들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산 ○○○구에 있는 B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2017. 4. 20.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떡과 과일 합계 71,000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중학교 교사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음식물의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4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조,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1.

⑮ 대구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9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17. 9. 1.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면, B 대구사무소의 소장인 위반자는 2017. 1. 25. B 위원회 위원장, 각 도지사 및 사무국장 등 총 11명(이하 ‘위원장 등’이라 한다)에게 각 15,000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제공하였는바, 관련 규정상 소장은 위원장과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반자를 면직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위원회는 각 도지사로 구성되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점, 위반자는 2016. 12. 21.경 위원장으로부터 회계처리 부적정, 근무상황관리 미흡에 관하여 주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위원장 등에게 한과세트를 제공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대가성 여부는 불문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위반자는 미풍양속에 따른 설선물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위반자가 위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는 점, 위반자와 위원장 등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한과세트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결정의 과태료 금액도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9.

⑩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의 조사를 받는 자로 2017. 06. 02. 10:00경 피조사자 신분으로 ○○○세관 조사계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세관직원 등에게 박카스 1박스(금품가액 1만원)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4.

2. 관련 판례

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결정

- 사 건** 2018과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8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위반자는 ○○시에서 여객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아 왔다.
- 나. 위반자는 2018. 9. 4 ~ 5.경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 다. ○○시의회의원 12명은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시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였다.
- 라. ○○시의회의장은 이 사건 금품 제공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위반자의 위 금품 제공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8. 3. 11.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위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지위에 있었고, 위반자는 ○○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자와 ○○시의회의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2. 관련 판례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제8조 제3항 제2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제8호)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금품이 비록 추석을 앞두고 제공된 약 5만 원 상당의 식품이기는 하나, 위반자는 ○○시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금품은 ○○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제공된 점, 이 사건 금품은 ○○시의회의가 2018. 8. 23.경 이루어진 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3억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한 이후로서 장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부조의 목적에서 이루어졌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는 합계 약 60만 원 상당(기록상 이 사건 금품의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첨부된 언론사의 기사 상으로 확인되는 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5만 원을 이 사건 금품의 가액으로 인정한다)의 6년간 난발백삼 12세트를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금품의 경우 환가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시의회의원들이 이 사건 금품을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금품이

○○시의회의원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3배에 상응하는 1,8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3.

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사 건 2017과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B고등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C의 품질부장이다.

나. 위반자 2016. 12. 23. B고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는 D로부터 급식용 찜빵에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면서 검사 및 해명을 요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2017. 1. 3. 위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곰팡이가 아님을 해명하면서 고향만두 왕교자골드 만두 1박스(소매가 71,820원)를 제공하였다.

다. D는 위 만두 1박스를 개봉하여 냉동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도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D에게 시간 71,820원 상당의 만두 1박스를 교부하였는바, 당시 D는 위 고등학교의 영양교사로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급식재료를 거수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D에게 위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위반자가 제공한 만두의 가액이 5만원을 미세하게 초과하거나, 출고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급식재료에 대한 검수·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영양교사에 대한 납품업체 직원의 선물은 위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물품의 가액, 그 밖에 위반자가 이를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9.

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8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도 B어촌계장이자 C 향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위반자가 2018. 3. 6. 12:30경 ○○○수산청 소속 공무원 5명(D, E, F, G부서 소속 H, I부서 소속 J)에게 한 사람 당 1~2박스씩 총 8박스의 ○○○도 우산고로쇠물 시가 합계 400,000원(=1박스당 50,000원 × 8박스) 상당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정청탁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3호에 정한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제공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위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8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7.

⑳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9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4. D

주 문 1. 위반자 A, B, C을 각 과태료 500,000원씩에 처한다.
2. 위반자 D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E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을 근거로 설립된 지방공단(법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므로, 그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으로 약칭한다)에서 정의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나. E공단은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 파견인 차량에 대한 견인료, 보관료 수납 및 파견인 차량의 반환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F에 ‘G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위반자 A은 E공단 주차사업팀의 팀장으로서 견인차량보관, 공영주차장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등 주차사업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반자 B은 G 견인차량보관소의 소장으로서 견인차량보관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반자 C은 (주)H의 실제 운영자인데, (주)H는 E공단 측으로부터 공단을 대신하여 주·정차위반을 한 차량을 견인하도록 위탁받은 업체이다. 위반자 D은 위 C의 다들로서 (주)H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라. 위반자 C은 2017년 3월 초순경 코카콜라 2박스(박스당 1.5리터 12개), 컵라면 4박스(박스당

2. 관련 판례

육개장, 짜파게티, 신라면, 새우탕, 등 16개), 캔커피 7박스(박스당 레쓰비 175ml 30캔), 비타500 10박스(박스당 10병) 총 시가 204,92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기사를 통해 G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반자 B에게 전달하였다.

마. 위반자 B은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중에 상급자인 위반자 A에게 휴대전화로 위 물품 수령 사실을 보고하였고, 위반자 A은 “대가성이 없는 물품이니 이번에 한하여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당일 오전 위반자 B으로부터 캔커피 3박스를 전달받았다.

2. 판단

가. 위반자 A, B, C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반자 A, B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함에도 자신들이 담당하는 차량 견인 및 보관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인 위반자 C으로부터,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물품(204,920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위반자 C은 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 A, B, C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위 위반자들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위, 위반자들의 위반 회수, 물품의 가액, 이 사건 이후 위반자들의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들에게 각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나. 위반자 D

위반자 D은 (주)H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위반자 C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 A, B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위반자 C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위반자 D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8.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2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6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홍보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고문으로 2016. 11. 중순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홍보관 운영자인 D와 함께 홍보관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과대광고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찰관 E를 만나 E에게 전기렌지를 제공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위반자는 2016. 11. 21.경 D으로부터 전기렌지 구입비용 명목으로 800,000원 상당의 전기렌지를 설치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의 위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의 가액, 금품을 제공한 경위, 위반사실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19

㉔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1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위반자는 C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D(대표 E)는 운동복 유니폼을 제작하는 업체이다.
- 나. 위반자는 2017. 10.경 C고등학교 야구부 유니폼을 D가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면서, D측으로부터 자신의 유니폼 348,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 다. 한편 위반자는 D의 대표자와 지인 관계로, 야구부 유니폼 교체 시 학교관리자인 교장, 교감 등에게 교체사실을 보고한 바 없었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학교법인의 직원인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다목에 의거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위반자의 담당업무는 야구부 감독이며 D는 위 학교의 야구부에 사용될 유니폼을 제작, 판매하였으므로 위반자는 D의 대표자와 직무관련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위반자가 직무관련자인 D의 대표자로부터 348,000원 상당의 유니폼을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위 유니폼의 가액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 같은 항 제8호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도 없어 과태료 불처벌 사유가 없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받은 유니폼의 가액, 제공받은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2.

㉓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B

주 문 위반자들을 각 과태료 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 ○○○ 이고, 위반자 B는 위 공단 직원인 사실, 위반자 B는 2017. 3. 31. 위반자 A에게 14만 원 상당의 배나무 1그루를 제공하였고, 위반자 A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자들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점, 위 나무의 제공 경위 및 제공된 나무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것이다.

위반자들은 위 나무는 폐목으로서 거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비록 위 나무가 포크레인 작업 중 일부 손상되긴 했으나, 이를 감안하여 위 배나무 가격을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나무는 위반자 A의 집 마당에 식재되어 잘 자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반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과태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위 법률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자들이 위 나무를 주고받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나무는 위반자 B의 모친이 경작하는 과수원을 정리하던 중 이미 포크레인에 의해 손상된 채 뽑혀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제공한 금품 가액의 2배 남짓에 해당하는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2항,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6.

②④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 4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8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주식회사 B의 이사인 위반자는 2016. 9. 28. 14:00경 ○○○발전 주식회사 C본부 보일러부 사무실에서 직원과 2017년도 C본부 제1~4호기 계획예방정비 일정 등을 이야기한 후, 27,000원 상당의 종합음료세트 2박스를 두고 갔다.
- 나. 주식회사 B는 발전설비 정비 및 공사 등에 관한 등록증을 취득하고,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이다.

2. 판단**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전의 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자신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발전 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관련 판례

나. 과태료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자가 이를 제공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8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0.

㉕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위반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2. 2. ○○○공단 ○○○지사에 산업재해로 인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7. 2. 10. 산업재해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인 사실, 위반자는 2017. 2. 21. 위 요양급여 승인 업무 담당자인 ○○○공단 ○○○지사 B부 소속 직원 C에게 소포로 시가 9,700원 사당의 식혜 24캔 1박스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그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9,7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금품 등의 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행위 이후의 사정(C은 즉시 이를 위반자에게 반환처리하고 신고를 하였고, 위반자도 청탁의 의도는 없었으며 법을 잘 몰라 생긴 일로써 선처를 바란다면서 C에 대하여 불이익 없게 하여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2. 관련 판례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0.

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금 6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제8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12. 18. 자신의 재산명시 사건(○○○법원 ○○○지원 B) 및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같은 법원 C)의 담당 판사와 참여관에게 25,000원 상당의 수삼 1박스와 5,000원 상당의 액자 1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29.

2. 관련 판례

㉔ 춘천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6과 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9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위반자는 2016. 9. 1. ○○○경찰서에 'B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위반자)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B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반자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 소속 C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여 2016. 9.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 나. 위반자는 2016. 9. 28.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D로 하여금 C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가로 약 40cm, 세로 약 30cm, 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 다. D는 2016. 9. 28. 14:30경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C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반자가 떡을 보내 경찰서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서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요청하였다.
- 라. C는 위 일시경 ○○○경찰서 주차장에 나가 D에게 이 사건 금품을 보낸 경위, D의 신분 등을 물어보았으나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를 반환하려고 해도 반환받지 않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이 사건 금품을 받아둔 후, 위반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금품을 D를 통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C는 같은 날 15: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경찰서장은 이 사건 금품 제공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위반자의 위 금품 제공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된다고 보아 2016. 10. 18.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위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2. 관련 판례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B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C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자와 C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각호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먼저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반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C가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C는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사회상규의 의미

어느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상 용어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20조에서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사회상규도 이와 통일되게 해석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18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의 의미나 판단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사회상규는 전체 법질서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윤리 및 사회질서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관행 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관행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를 이루는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관련 판례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금품 수수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나)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사회의 청렴도는 경제 발전에 걸맞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의 공공부분 부패인식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참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공공기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아울러 공직자등의 의무로서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은 실제로도 법령에 정해진 대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받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된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금지’와 금품등 제공금지를 각각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즉, 제2장에서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장에서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품등 수수 및 제공 금지와 관련하여,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이더라도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등에게 제8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른 형사적 제재를(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2항, 제5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의 행정상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5항 제3호).

아울러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제9조), 누구든지 위반사실을 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이와 같이 금품등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제8조의 핵심 내용은, 기존 뇌물죄 등과는 달리 금품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자등 직무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직자등 직무수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2. 관련 판례

다) 이 사건 금품 제공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의 직무 중 범죄의 수사, 특히 고소사건의 수사는 중립적·객관적인 지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도 있다. 수사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이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이 수사 진행 중에, 더욱이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D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고 그 가액도 45,000원 상당인바, 이와 같은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의 금품 제공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위반자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와 관련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경찰관이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식으로 드시라는 의미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출석 일정을 조율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여기에 부정청탁이나 대가성의 존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3항 위반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고의는 위반자에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고 여기에 부정청탁의 목적이거나 대가성 인식 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특히 고소인인 위반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 진행 중인 고소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규범적 견지에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반자와 담당 경찰관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등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반자에게 이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자가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금품은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로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담당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6.

2. 관련 판례

❖ 경조사비 관련 판례

①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 29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위반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위반자는 2016. 5. 30.경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택매수확인서 등 각종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비공개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2016. 8.경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나. B과 C(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은 위 행정심판의 서류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 조사결과의 행정심판위원회 상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 다. 위반자는 2016. 11. 말경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다른 공무원과 통화하던 중 담당 공무원이 신혼여행 중임을 알게 되자, 2016. 12. 2. 50,000원을 우편환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위반자는 2016. 12. 5. 9:40경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안건 처리를 부탁한 후 위 우편환 발송 사실을 알렸다.
- 라. 담당 공무원은 2016. 12. 5. 10:00경 D과 소속 주무관으로부터 위 우편환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우편환을 위반자에게 소포로 반송한 후 소속기관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위 우편환 수령 및 반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은 위반자의 행정심판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반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위반자가 제공한 금원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반자는 예전부터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업무관계로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만 하던 관계였던 점, ② 담당 공무원이 위반자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 등을 알린 바 없고, 위반자가 우연히 담당 공무원의 부재 사실을 문의하던 중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③ 위반자는 전화통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환을 발송한 사실을 알리면서 업무처리를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④ 우편환을 발송한지 불과 4일 후인 2016. 1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자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자료의 공개를 결정하는 등 담당 공무원과 위반자와의 업무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⑤ 담당 공무원이 위반자의 행정심판 사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위반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이 결혼을 축하할 목적으로 제공한 축의금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품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보기 어렵다.

2. 관련 판례

또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물품 제공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금품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민원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반자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50,00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위반자가 물품을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8.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1029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그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직자등’에 해당 한다.

나. 위반자는 ○○○공사 ○○○본부 B부 차장으로, C은 위반자의 상급자로 같은 부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위반자는 2016. 10. 4. 위 C으로부터 C의 지인인 D에 대한 경조사비 50,000원을 C 명의로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위반자의 비용으로 대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3회, 합계 650,000원의 경조사비를 대신 송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C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다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경위, 위반자의 위반 회수, 제공한 경제적 이익, 위반자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본 건으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던 점, 위반자가

2. 관련 판례

○○○공사에서 약 28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1996. 4.경 E 등 여러 차례 공로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2

③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 4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6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B대학교 C캠퍼스 D과 교수로서, 2016. 10. 30. 장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1인, 강사 5인으로부터 각 2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아 법정한도 10만 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가 청첩장을 배포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결혼식을 공지하는 글을 기재하였고 일부의 지인들에게는 모바일 청첩장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번호도 전달함으로써 이것이 전파되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지인과 직무관련자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점, 비록 위반자가 법정한도 초과금액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6. 11. 9.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2016. 11. 14. B대학교 경영평가실에서 위반자에게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권유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반자의 자발적인 반환으로 볼 수 없는 점(위반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오후까지 C캠퍼스에서 수업하고 목요일 밤에 경기도의 집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축의금의 개인별 금액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반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반환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 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2. 관련 판례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검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반자가 축의금 명목으로 대학원 재학생 2인으로부터 받은 각 금 10만 원, 1인으로부터 받은 금 5만 원도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태료 재판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반행위’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개시되는 것인데(청탁금지법 제14조, 제23조 제7항) B대학교 총장은 위반자가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한도인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여’위반사실을 통보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의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2. 10. 19.자 2012마1163 결정 참조) 비록 대학원 재학생들이 교부한 축의금이 위 위반행위와 동일한 결혼식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위반행위에 특정된 금품 제공자와는 별개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태료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결정되므로 대학원 재학생들의 축의금을 포함시키느냐에 여부에 따라 산출되는 과태료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위반사실과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대학원 재학생들로부터 교부받은 축의금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9.

④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6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금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고용노동청 ○○○지청 소속으로 ○○○과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위반자가 2017. 12. 16.경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직무 관련 거래기관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축의금 2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반자가 지급받은 위 축의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경조사비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위 축의금이 위 대표이사 ○○○의 축의금 10만원과 위 회사 소속 전무이사인 ○○○의 축의금 10만원의 합계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위 축의금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의 이름으로만 지급되었던 점, 위 축의금이 위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된 점 및 그 밖에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4.

⑤ 부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4. D
5. E

주 문 위반자 A을 과태료 금 350,000원에, 위반자 B를 과태료 금 1,060,000원에, 위반자 C을 과태료 금 150,000원에, 위반자 D을 과태료 금 310,000원에, 위반자 E을 과태료 금 310,000원에 각 처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반자 A은 F고등학교 축구부 부감독, 위반자 B는 위 축구부 감독, 위반자 C은 위 축구부 코치, 위반자 D은 위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 위반자 E은 위 축구부 학부모회 총무로서, 아래 ① 내지 ⑤항 기재와 같이 위반자 A, B, C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반자 D, E은 같은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위반자 A은 2016. 11.경 장모상을 당하여 ○○○의료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2016. 11. 25. 위반자 D, E이 ‘F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이름으로 보낸 화환 1개 88,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 ② 위반자 B는 2016. 11. 25. 위반자 E에게 위반자 A의 장모 장례식장에 화환 4개, 다른 지인의 장례식장에 화환 2개 등 화환 6개 합계 513,000원 상당의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 ③ 위반자 C은 2017. 1. 31. ○○○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반자 D, E이 ‘F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이름으로 보낸 출산 축하 꽃병 1개 67,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 ④ 위반자 D, E은 위반자 A에게 위 ①항 기재와 같이 화환 1개, 위반자 C에게 위 ③항

기재와 같이 꽃병 1개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반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각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위반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심문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 고려하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2.

2. 관련 판례

❖ 현금·상품권 관련 판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 4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위반자는 전기공사 업체인 B 소속 사원이고, C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사 D본부 판매사업실에 근무하는 사옥관리 담당 사원이다.

나. 위반자는 2016. 10. 8. ○○○공사 E 사옥에서 내선 전기공사를 시행한 다음 위 사옥의 관리자인 C에게 같은 날 20:50경 위 사옥 내 수전실에서 공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후 위반자가 C의 사무실로 먼저 올라갔고 C는 수전실 정리를 마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다. C는 같은 날 21:00경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롯데백화점 상품권 봉투를 발견하고 즉시 위반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위반자의 휴대전화가 통화중이어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후 21:05경 위반자와 통화가 이루어졌고 C는 위반자에게 상품권을 받을 수 없으니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C는 2016. 10. 10. 09:00경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위반자에게 위 상품권을 돌려주었고 위반자는 이를 수령하였다. C는 위 상품권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위반자는 10 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자신과 직무 관련이 있는 ○○○공사 직원 C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2016. 10. 8. 21:00경 C의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C의 책상으로 갔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다이어리에 끼워 놓은 상품권을 실수로 흘린 것이지 고의로 놓고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사무실 전화 통화내역에는 위 일시에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같은 날 21:05경 이루어진 통화 내역은 C가 위반자에게 전화한 내역임)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7.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7과 2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위반자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과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위 B는 각종 사무용 소모품을 납품하는 도소매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진흥원에 사무용품 납품하고 있었다.
- 나. 위반자는 2017. 8. 31. 위 진흥원 C에서 발주한 사무용 소모품을 2017. 9. 6. 15:00경 택배로 납품하였는데, 사무용품 서류봉투에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을 넣어 함께 보냈다.
- 다. 위 C 담당직원인 D은 이를 발견하고, 같은 날인 2017. 9. 6. 17:30경 등기우편으로 이를 위반자에게 반환하였고, 즉시 이와 같은 사실을 ○○○진흥원 감사실에 신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공기관인 ○○○진흥원 C에 근무하는 D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D의 담당업무는 ‘E 업무 등’인바, 위반자는 위 C의 발주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될 사무용 소모품을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D은 위반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반자가 D에게 10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위반자의 행위는 그 가액이 10만 원이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 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도 없어 과태료 불처벌 사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공직자등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된 금품등의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0

③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으로서 2017. 01. 24. 14:00경 D구청 뒷길 E편의점 앞 도로에서 공직자인 D구청 재정비사업과에 근무하는 F에게 G상품권 10만원권 1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2.

④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 4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25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2016. 12. 9. 15:30경 위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교실에 없는 사이 담임교사의 다이어리에 100,000원권 백화점상품권 1매를 끼워넣고, 그 주변에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상자를 두고 온 사실을 인정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12,000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금품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딱히 발견되지 않는다.

나. 과태료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관련 판례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 그 밖에 위반자가 이를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2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7.

⑤ 대전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 5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 B에 있는 C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사실, 위반자가 2016. 10. 5. 16:30경 위 C 계획운영과 사무실 내에서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D 중사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려다가 위 D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간인인 위반자 본인 및 위반자의 직원들의 군부대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D은 위반자에게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위반자가 D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려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자는 위 D이 자가 면역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선물로 상품권을 건네주려 한 것일 뿐 D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 위반행위는 대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반자가 제공하려 한 상품권 가액이 10만 원인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D과 위반자의 관계, 위 상품권 제공 전후의 상황, 상품권의 가액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반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 제8조 제3항 제8호가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본 사정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1.

⑥ 대구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30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는 ○○○공사 B지사 요금관리부 요금파트에서 재직하면서 고압검침, 저압협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위반자는 추석연휴 전날인 2017. 9. 29. 08:20경 요금관리부 사무실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요금관리부 요금파트장인 C 차장의 책상 위에 있는 마우스패드 아래에 D상품권 30만 원권 1장이 든 봉투를, 같은 부 수금파트장인 E 차장의 책상 위 마우스패드 아래에 D상품권 10만 원권 3장이 든 봉투를 각각 놓아두었다. 위 봉투에는 “~ ~ F”(조사보고에는 “~G”, “H”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반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된 메모지가 들어있는데, 이는 위반자가 자신의 이름 끝 자를 따서 만든 문구이다.

다. 한편, 위반자는 같은 날 18:20경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요금관리부 부장 I에게도 홍삼캔디를 들고 와 드시라고 하자 I은 이를 사양하였는데, 위반자는 곧이어 “상품권 1장을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열어 보였다. I은 위반자의 업무수첩 안에 상품권 봉투로 추정되는 내용물이 보이자 이를 거절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1) 위반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들에게 또는 그 공직자들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C, E에게 각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또한 I에게도 상품권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I의 지위 및 위반자가 C 등에게 제공한 상품권의 약수 등에 비추어 위반자가 제공하였던 상품권의 액수는 적어도 30만 원 상당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당시 C, E, I은 ○○○공사 소속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해3당하고, 요금관리부장 I, 요금관리부 요금파트장인 차장 C은 위반자의 직속 상급자이며, 요금관리부 수금파트장인 차장 E는 같은 부 소속으로서 위반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이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들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위반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위반자의 주장

- ① 위반자는 C, E에게 의례적인 추석 선물을 하고자 2017. 9. 20.경 J마트에서 구입한 1만 원권 상품권을 3장씩 나누어 2개의 봉투로 만들고 동봉된 메모지에 “~·~ F”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넣어두었는데, 이후 자신의 남편이 추석 때 고모님과 막내 처제에게 선물하라고 준 D상품권 30만 원권이 든 봉투 2개와 혼동하여 이를 C 등에게 준 것이다.
- ② 또한 I에게는 위반자가 C, E에게 상품권을 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을 보고하고자 상품권 이야기를 꺼냈는데, I이 이를 상품권 제공의 의사표시로 착각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E, I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반자가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이 굳이 위반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 하는 점(I은 2번째 진술에서는 C 등과 같이 자신도 마우스패드 밑에서 상품권 30만 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고, 위반자가 “즐거운 추석 되세요”라고 문자 발송하여

2. 관련 판례

확인하니 위반자가 자신이 준 것으로 인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수수금지 금품 제공 자진신고건 조사보고 2쪽), ② 위반자는 친척에게 제공할 30만 원권 상품권을 실수로 C 등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반자가 친척들에게 제공할 30만 원권 상품권을 넣은 봉투에 동봉된 메모지에 “~·~F”이라는 문구를 기재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위반자는 습관대로 위 문구를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제공할 대상자의 나이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위반자는 1만 원권 상품권 6매를 구입해 이를 둘로 나누어 C, E에게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위반자가 I에게 제공하려고 한 상품권 봉투의 존재가 설명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④ 위반자가 이미 C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돌려받은 지 한참 지난 퇴근 이후 시점에 굳이 I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수수 등의 경위,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여부, 위반행위 이후의 위반자의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상품권의 가액, 위반자가 이를 제공한 경위, 제공된 상품권이 모두 반환되었고, 일부는 제공의 의사표시에 그친 점, 위반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따라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00원에 처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4.

⑦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18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6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B은 직무관련자인 C병원 중환자실 소속 직원들이 걷은 병동 회비로 명절선물 명목으로 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을 2차례(2017년 추석, 2018년 구정)에 걸쳐 200,000원 상당 수수하였고, 위반자 A은 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을 3차례(2017년 구정과 추석, 2018년 구정)에 걸쳐 300,000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8.

⑧ 제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2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금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지방검찰청 B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형사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20만원을 검찰주사 C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31.

⑨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18.10.23.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울산 ○○○중학교 교사였던 위반자가 해당 중학교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2항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위 금원을 수업비용 등으로 모두 지출하는 등 위 금원을 지급받은 데에 대가성이 없었으므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위반자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위반자의 직책,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위반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액수 및 위반행위의 정도, 사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액은 최하한인 400,000원으로 정한다).

2018. 12. 4.

⑩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2018. 3. 20.경 자녀의 담임교사 C에게 시가 12,700원 상당의 디저트 세트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고등학교 교직원인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2,70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금품등의 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 나.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담임교사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바로 기프티콘 발송을 취소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3.

⑪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6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2017. 5. 15. 자녀 담임교사인 C에게 시가 98,000원 상당의 홍삼정 에브리타임 모바일 기프트콘을 선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고등학교 교직원인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9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금품등의 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담임교사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바로 기프트콘 발송을 취소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8.

⑫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7과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인 위반자는 2017. 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C 소속 직원에게 뮤지컬 ‘그날들’S석 초대교환권(티켓 표면에 ‘1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2매 합계 220,000원 상당을 우편을 통해 제공하였다.
- 나. 주식회사 B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C의 홍보 관련 계획 및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자신과 직무 관련이 있는 C 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조,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9.

⑬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 4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 사무장으로서, 2016. 10. 11. 12:00경 문화재 관리를 위해 위 C사에 방문한 ○○○재단 D팀장 E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자신과 직무관련이 있는 위 E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문화재를 관리,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단순히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녁식사를 하라는 의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으로도 달리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금품이 며칠 후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직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13.

⑭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3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6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4. 19. ○○○소속 경찰관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금품 제공 경위 및 제공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품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과태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위 법률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자가 위 금품을 제공하기 전날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서류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고 이에 대한 단순한 감사 표시로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금품이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제공한 금품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3.

⑮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위반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공사 B지사에 근무하던 토목직 공무원 A(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2016년 B지사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직자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위 B지사 관내의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업체이다.
- 나. 위반자는 C의 이사 D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2016. 12. 경 경기도 E 소재 식당에서 D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D는 현금을 지급하면서 위반자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다. 위반자는 C의 포장공사의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에 따라 C에 대하여 과다한 기성금이 지급된 점이 ○○○공사 B지사의 감사 결과 문제 되었다.
- 라. ○○○공사 B지사장은 2017. 3.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2. 관련 판례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판단 및 결론

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위반자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시공사인 C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¹⁾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위 위반행위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함이 명백하다.

나. 과태료 금액에 관한 판단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의 사이의 인적 관계,

1) ○○○공사 B지사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적시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으나, 수수금액이 100만 원으로 제1항(100만 원 초과)이 아닌 제2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반자가 공여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직무관련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공여자로부터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사내 감사 결과 실제로 위반자가 공여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과다한 기성금이 집행된 점이 문제가 된 점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31.

⑯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18. 07. 03.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 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반자는 ○○○건설본부 B과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에 도로 경계석을 납품하고자 입찰한 사업자로서 2017. 9. 15. 14시 50분경 ○○○건설본부 B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B과 공무원인 ○○○의 책상 위에 현금 200,000원을 올려두어 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약식결정의 과태료 금액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위반자가 주장하는 위반의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위반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과태료를 감면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8. 10. 12.

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중학교 교사로 2018. 11. 14. 11:00경 위 B중학교 과학실에서 ○○○교육지원청 장학사에게 현금 100만 원(5만원 권 20장)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 위반자의 위 현금 제공행위는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의 종류와 가액,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2.

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

사 건 2017과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주 문 1. 위반자 A, B을 각 과태료 600,000원에 처한다.

2. 위반자 C을 이장협의회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위반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 ○○○시 C읍 이장협의회(이하 ‘이장협의회’라고만 한다)는 ○○○시 C읍의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반자 B은 이장협의회의 회장이다.

나. 위반자 A은 2016. 1. 2.부터 ○○○ C읍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1. 1.자로 ○○○ D으로 발령받게 되었다. 이에 2016. 12. 30. 저녁 무렵 ○○○시 C읍에 위치한 식당에서 위반자 A를 비롯한 전출 직원 송별행사가 개최되었다.

다. 위 자리에서 위반자 B은 위반자 이장협의회 명의로 위반자 A에게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별금 유사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라. 이로써 위반자 A은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위반자 B은 공직자인 위반자에게 A에게 돈을 제공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의 된다.

2. 위반자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무관련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읍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 제119조).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위반자 A이 읍장으로 있는 C읍의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이장협의회 회칙 제4조, 제5조 등 참조).

- 2) 위와 같은 위반자 A과 위반자 이장협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돈의 수수가 위반자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들은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위반자 A은 위 300,000원을 이장협의회의 인원수(71명)로 나누어 1인당 4,225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또한 위반자 A은 이장협의회 임원들의 수에 상응하는 식비 및 노래방비를 위 300,000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자 B은 300,000원을 현금으로 위반자 A 개인에게 지급한 것 일 뿐 식사비 및 노래방비를 계산한 것이 아니다(한편 해당 식사비는 위반자 A이 개인적으로 지출 한 것이 아니라 C읍의 직원 격려 급식비, 송년행사 급식비 예산에서 이미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①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

2. 관련 판례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②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가 이장협의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위 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반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금품이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위 ②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 1)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2) 그러나 이장협의회를 위 송별행사의 주최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자 B은 위반자 A 개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일 뿐 참석자들에게 금품등을 일률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앞서 본 것과 같이 식사비는 C읍의 예산에 의하여 이미 결제된 상태였다).

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2) 전출 직원에 대한 전별금 교부는 과거에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던 점, 이 사건의 경우 공개된 자리에서 돈이 교부되었고, 위반자 A이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돈의 수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대가성 없거나 부정한 청탁이 없는 금 품 수수행위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② 읍장과 읍내 마을 이장협의회는 직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수수된 돈의 액수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돈의 수수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우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 A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태료의 산정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돈의 수수 경위, 돈의 액수 및 소비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 A, B를 각 과태료 600,000원에 처하고,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의 규모, 영리성이 중하지 아니하고, 이장협의회 회장인 B를 과태료에 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3.

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사 건 2017과 1006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금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제8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산업재해근로자로 2017. 3. 17. ○○○공단 ○○○지사 소속 B 담당직원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7.

⑳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519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750,000원에 처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종사하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위반자의 대표자인 B이 2017. 12. 6.경 ○○○시 C건물 2층에 위치한 위반자의 협회사무실에서 위반자 단체에서 주최하는 유공자 포상 행사의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E에게 상패를 수여하면서 이와 더불어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밖에 위 금품의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위반자는, 위반자가 E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반자 단체의 성격, E의 담당 업무의 내용, 위반자와 E의 관계 및 이 사건 위반사실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2. 관련 판례

있고,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반자에게 7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24조,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6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4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3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공단 체육프로그램 B강사인 위반자는 2017. 3. 29. 19:00경 서울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직무담당자인 ○○○구 공무원인 E에게 회식비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조,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3.

㉔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6과 2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 가. 위반자는 2016. 10. 7. 01:35경 ○○○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경찰서 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 나. 조사과정에서 같은 일행이 고성과 난동을 부리는데도 경찰관이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설득하고 자신에게 커피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자, 위반자는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1만 원권 1장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였다.
- 다. 위반자는 조사가 끝난 후 사무실을 나올 때 1만 원권 1장을 몰래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 라. 경찰관은 위반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1만 원권을 발견한 후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서울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고, 2016. 10. 7. 09:30경 위반자에게 반환하였다.

2. 판단

-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 위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자로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직무관련자인 위반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경찰관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가 경찰관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반된다.

나.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위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설사 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가벼워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된다.

- 1)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진 않는 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경우 그 직무관련자 특히 수사대상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이 금품등의 수수가 엄격하게 금지된 수사기관에 그 직무관련자는 그 의도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관련자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소액을 금품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위반자는 경찰관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경찰관은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로 인하여 자진신고 후 그 경위에 대하여 감찰관에게 진술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금품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반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위반자의 행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판례

다. 다만 위반자의 행위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등의 액수가 적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리라고 잘 못 생각하고 위반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과태료 액수의 하한(제공된 금품등 가액의 2배)으로 결정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7.

㉓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 3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9. 20. 08:10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자신의 바지에 대변을 보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이를 수습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2016. 10. 15. 14:50 화성동부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경위 C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작성을 마친 후 위 경위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명함과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자신의 직무 관련이 있는 위 경위 C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금액도 비교적 다액에 해당하므로 비난 받아 마땅하나, 한편 금품수수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위반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 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14.

㉔ 수원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7과 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48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기후 및 환경변화와 관련된 월간지를 발행하는 B의 직원으로서, 2017. 1. 11. 〇〇〇시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본사를 방문하여 그 홍보실 광고업무 담당자와 광고제재와 관련된 면담을 나눈 후 2017. 1. 13. 16:00경 위 광고업무 담당자 앞으로 연극 초대관람권 6매 24만 원(1장당 4만 원) 상당을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위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그 기관의 장과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D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므로, D의 홍보실 광고업무 담당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수수 등이 금지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제공은 위반자가 소속된 B에 D의 광고제재를 청탁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과태료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 그 밖에 위반자가 이를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48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1.

2. 관련 판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4. D

5. E

주 문 위반자 A, D, E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위반자 B, C에게 과태료 각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 A은 F중학교 야구부 감독, 위반자 B, C은 각 위 야구부 코치이고, 위반자 D, E은 위 야구부위원 학부모들로 각 학부모회장, 학부모회 총무이다.

나. 위반자 D, E은 2017. 3. 15.부터 2017. 5. 15.까지 야구부 학부모들로부터 930만 원을 지급받아, 위반자 A에게 450만 원, 위반자 B에게 225만 원, 위반자 C에게 255만 원을 제공하여 3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다. F중학교장은 평택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에 관하여 수사의뢰를 하였고, 검찰은 위반자 A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위반자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상인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각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반자 A

위반자 A은 수수한 금품이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위반자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위반자 B,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 B, C에 대한 위반사실 인정되나, ① 급여에 대한 실비 변상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③ 위반자 A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위반자 D, E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 D, E에 대한 위반사실 인정되나, ① 학부모들로서 금품제공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반자 A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반자 D, E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2018. 9. 13.

2. 관련 판례

❖ 골프 관련 판례

①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는 2015. 3. 30.부터 공직유관단체인 주식회사 B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수주 업무, 현장관리 및 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나. 위반자는 2017. 3. 18. 직무관련자인 C 사장 D으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2017. 4. 8. 직무관련자인 E 사장 F으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에 정한 공직자등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D와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었으므로 2017. 3. 18. 자 골프향응은 청탁금지법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B는 2014. 12. 16.부터 2016. 4. 30.까지 진행되었던 G교회 신축 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D이 운영하는 C은 위 공사에 음향시설을 제공하였던 점,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직무관련성이 있기는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자는 주식회사 B가 감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H 교회 신축 공사 기간 중에 위 공사 현장에서 조명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E 운영자 F로부터 골프향응을 제공받는 등 접대를 제공한 업체와의 직무관련성이 높은 점,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과태료 금액을 15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8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1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2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7. 5. 5. B ○○○건설현장 소장 C과, 직무관련자인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E, 처장으로 근무한 망 F과 함께 광주소재 G에서 함께 골프를 치면서 1인당 15만 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E, 망 F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의해 주문 기재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23.

③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0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B기금 이천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6. 12. 10경 C클럽에서 직무관련자인 대출보증청탁자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골프비용 244,000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5.

2. 관련 판례

④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B수산청 C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7. 10. 14. 경기 가평군 소재 D 골프장에서 “E 축조공사”의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되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F 임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골프비용 및 식대 등 약 338,500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6.

⑤ 수원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7과 1027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위반자는 충남 B군에 본점을 두고 교통영향평가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D은 충남 B군 공무원으로서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건설교통과(도로교통 부문) 등에 근무하면서 관내 각종 공사계약·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한바 있다.
- 나. 위반자는 2016. 11. 12. 위 D을 비롯하여 E, F와 함께 골프를 쳤다(이하 ‘이 사건 골프모임’이라 한다). 위반자는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하였다.
- 다. 특히 주식회사 C은 2016. 8. 24.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G’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때 D이 B군 건설교통과 소속으로서 위 용역업무의 감독을 직접 담당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관련 판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과태료 부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는 충남 B군 일대에서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D은 충남 B군에서 그 관할의 도로교통 관련 용역계약의 체결과 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으며, 더욱이 D은 주식회사 C이 수행한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이사건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약 2달 전까지 담당한 바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금품 등으로 정해진 골프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① 직무관련성이 없다. 주식회사 C이 수행한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으로써 발주처의 이권개입이 있을 수 없고 수행금액도 비교적 소액(1,100만 원 상당)으로 D에 대하여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 ② 지역 내 토목관련 종사자들 사이의 친목도모 목적에 불과하였다(이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택한다).
- ③ 위반자가 D의 그린피 25만 원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D이 동반자들의 캐디피 12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였다.

2)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령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위반자와 D 사이에 당시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와 D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친목 도모 목적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상규’란 형법 제20조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와 통일되게 해석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 관련 판례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정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018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대가성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참조]에 비추어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 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을 부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위반자는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고 D은 당시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의 체결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2달 전까지 직접 위반자 수행 용역을 감독하기도 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위반자가 D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②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 D은 감봉 1월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골프모임의 동반자로서 그 외에도 B군 도시건축과 소속 E과 ○○○공사 H으로 있던 F이 있었는데, F은 이 사건 골프모임건으로 2017. 6. 해임되었고, E 역시 타 건축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③ 접대한 골프비용 250,000원은, 그 가액 자체로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 범위(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선물 5만 원)를 넘어서므로, 청탁금지법 취지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금품제공 금액에 관한 판단

D이 2017. 2. 2. 행정자치부 감사실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위반자가 자신의 골프비용 25만 원(그린피 20만 원, 카트로 2만 원, 캐디피 3만 원의 합계, 이는 해당 골프장에 공지된 그린피, 카트로, 캐디피의 비회원 주말가격과 일치한다)을 부담하였고 자신은 돈을 낸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B군수로부터 위반자가 25만 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과태료부과통보의뢰가 있었고 D도 수수 금품등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결정을 받은 사실, 위반자는 D이 캐디피 12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가 D에게 위 25만 원의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과태료 금액에 관한 판단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가 비교적 직무관련성이 높은 공직자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D이 위반자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D에 대하여 받은 금품등 가액 25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결정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8.

⑥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1009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8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소명된다.

가. 위반자는 2017. 9. 9. 당시 ○○○부 소속 공무원이다.

나. ○○○부장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위반사유로 위반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위반자로 통보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1) 골프 향응 수수

(가) 위반자는 2017. 9. 9. 제주시 B 소재 C에서 ○○○부 직원 D 및 E 주식회사 사장 F 등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골프운동을 하였고, 위 F이 위 6인의 골프비용(비회원가 기준 총 1,307,600원)을 부담함으로써, 위반자는 217,93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위반자는 2017.9.10. 전향과 같이 C에서 ○○○부 직원 D, G 및 전향의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골프운동을 하였고, 위 F이 역시 위 7인의 골프비용(비회원가 기준 총 1,574,000원)을 부담함으로써, 위반자는 224,85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음식물 향응 수수

위반자는 2017. 9. 9. 19:30경 전향의 골프운동을 마친 후 제주시 H 소재 I횃집에서 D 및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주식회사 J 이사 K이 위 6인의 식사비용으로 1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반자는 25,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숙박 향응 수수

위반자는 2017. 9. 9. 저녁식사 후 22:30경 L리조트 골프텔에 ○○○부 직원 D, G 및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함께 숙박하였고, F이 위 7인의 숙박비용(비회원가 기준 총 1,100,000원)을 부담함으로써, 위반자 157,14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항공권 수수

위반자는 위 F으로부터 2017. 9. 9. 08:00 김포→제주 항공권 및 2017. 9. 10. 제주→김포 항공권을 제공받음으로써, 항공권비용 230,2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가. 위반자의 주장

- (1) 금품제공자로 특정된 E과 J은 최근 5년간 ○○○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부로부터 수주받은 업체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며, 위반자는 위반행위 당시 ○○○부 M과에 근무하면서 N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건설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공사 감독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여왔으므로, 위반자와 금품제공자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
- (2) 골프 및 숙박 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수수액은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회원가로 산정된 금액인데 이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므로, 위 공시된 비회원가가 아니라 F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F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액을 산정하는 경우 1인 당 수수액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고, 위반자는 F에게 골프비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캐디피로 12만 원을 부담하였는바, 결국 F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은 없다.
- (3) 음식물 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25,000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 (4) 항공권 수수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항공권 비용은 위반자가 항공권 구매대행을 의뢰한 여행사 직원인 P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위반자가 공항에서 항공권을 수령하면서 위 P에게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이지 F로부터 항공권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고 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금품제공자인 E, J 등이 최근 5년간 ○○○부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업체들은 도로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로서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한 위반자가 위반행위 당시 현실적으로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청 ○○○과에 근무한 사실²⁾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래에 공사계약체결이나 공사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위반자가 ○○○부 소속 공무원인 이상 건설업은 그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고 관련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나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골프 및 숙박 향응 수수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에서 통보한 위반사유

2) ○○○부의 과태료부과대상자통보서 첨부서류 ‘4. 관련자들 인사이동 현황’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1. 2. 14.부터 2014. 2. 9.까지 ○○○청 ○○○과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2017. 9. 9. 골프비용으로 217,930원, 2017. 9. 10. 골프비용으로 224,850원 2017. 9. 9.~9. 10. 숙박비용으로 157,140원을 수수하여 총 599,92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소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F이 회원가로 골프비용 등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자가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원 할인 가격이 아닌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통상의 거래가격’이란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가격이어야 할 것인바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회원가를 바탕으로 위반자가 F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반자는 F에게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골프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음식물 향응 수수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 2017. 9. 9. I횃집에서 K으로부터 식사비용으로 25,000원은 수수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서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식사비용은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반자가 K으로부터 수수한 식사비용 25,000원은 수수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항공권 수수 여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F이 위반자의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바 이 부분 위반자의 금품 수수 사실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도 수수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관련 판례

다. 소결

따라서 위반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총 599,920원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과태료 액수의 산정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자가 수수한 금품의 종류와 가액, 수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가 수수한 금품 가액(599,920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8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9.

⑦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결정

사 건 2017과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6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B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반자는 2016. 12. 10. 충남 C군 도시건축과 소속 지방시설주사보인 D을 비롯하여 E, F과 함께 골프를 쳤다(다음부터 ‘이 사건 골프모임’이라 한다). 위반자는 D 몫의 골프비용 130,000원을 부담하였다.
- 나. 당시 D은 충남 C군 관한 건축 인허가 및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관련 판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는 B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D은 충남 C군 관한 건축 인허가 및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 130,000원을 부담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금품등으로 정해진 골프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반자와 D 및 E, F, G은 지역 선후배 등의 관계로 2014년경부터 'H'이라는 명칭의 친목회를 구성하는 등 절친한 관계에 있어, 2015. 3.경부터 골프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골프모임에서도 골프비용 및 밥내기의 계임을 하다가 위반자의 팀(위반자, E)이 D의 팀(D, F)에 지게 되어 위반자가 골프비용을 부담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위반자와 D 사이에는 어떠한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골프모임에서의 비용을 부담한 것도 취미생활 도중에 일어난 것에 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위반자와 D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제8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택한다).

2) 이권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령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위반자와 D 사이에 당시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와 D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위반자가 D 및 E, F, G과 함께 'H'이라는 친목회를 구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반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반자는 D 등과의 골프내기에서 저서 골프비용을 부담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친목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상규'란 형법 제20조가

2. 관련 판례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와 통일되게 해석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정신이나 그 배우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써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정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18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참조]에 비추어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 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위 인정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을 부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반자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D은 건축 인허가 및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위반자가 D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의입장에서 볼 때 공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② 위반자는 2015. 6.경에는 D에게 70만 원 상당의 중고 골프채를 선물로 준 적도 있었고,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골프모임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D과 함께 골프를 쳤는데, 그 중 대부분의 골프비용을 위반자가 부담하였다(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 통보가 되었고, D은 위 전체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았다).

- ③ 접대한 골프비용 130,000원은, 그 가액 자체로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 범위(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선물 5만 원)를 넘어서므로, 청탁금지법 취지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와 D이 종전부터 친목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가까운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친목 활동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D이 위반자와 관련하여 담당할 업무가 있었다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26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1.

⑧ 대구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169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18. 10. 18.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7. 18.부터 2018. 1. 21.까지 ○○○고용노동청 ○○○지청 B으로, 2018. 1. 22.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청 ○○○지청 C으로 각 근무한 사람으로서, ① 2017. 5. 6. 경북 D에 있는 'E'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 G으로부터 420,500원 상당의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② 2017. 11. 26. 경북 H에 있는 'I'에서 위 G으로부터 760,110원 상당의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③ 2018. 4. 7. J 주식회사의 이사 K으로부터 572,000원 상당의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2,61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그 지위,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G, K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위반자가 제공받은 금품 등의 가액, 위반 횟수, 위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9.

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유기화학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포항공장 관리부장인 위반자가 2018. 3. 10. ○○○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고용노동청 E지청장이었던 F에게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등 각종 감독·점검 및 노동청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18,000원 상당의 향응(식사, 골프)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금품등의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이는 위반자에게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제공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26.

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고용노동청 ○○○지청 B으로서 2018. 4. 15. 부산 ○○○군 C 소재 D에서 직무관련자인 부산 해운대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F로부터 75,000원 상당의 향응(골프장 회원이 아님에도 회원가 할인혜택을 받음)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1.

⑪ 광주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7과509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32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위반행위 통보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공사로부터 C 소재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위반자는 ○○○공사 E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관한 B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7. 4. 10. ○○○공사에, 위반자가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무료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는 비위사실을 통보하였고, ○○○공사는 이 법원에 위반자가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골프장 코스점검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순번	일시	접대 금액
1	2016. 10. 30. (일) 08:30	50,000원
2	2016. 11. 13. (일) 07:15	60,000원
3	2016. 11. 19. (토) 07:53	60,000원
4	2016. 11. 20. (일) 08:45	60,000원
5	2016. 11. 27. (일) 10:58	60,000원
6	2016. 12. 18. (일) 11:00	40,000원
합계		330,000원

2. 판단

가. 위반자의 주장

2016. 11. 20.에만 골프 라운드를 했고, 나머지 위반일시에는 B과 현안을 협의하고 코스점검을 위해 업무상 필요로 골프장을 방문했을 뿐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골프운동을 하고자 하는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운동예약을 대신 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 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반일시의 골프예약자 명의가 위반자 또는 ○○○공사 F로 되어 있는 점, ② 위반자는 문화체육부의 감사에서도 골프라운드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B 임직원 일동이 작성한 탄원서에 ‘골프장 잔디 등의 점검과 관리를 위해 골프라운드가 이루어졌고, 그 책임은 골프라운드를 제안한 B 임직원의 책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향응 제공자인 B측도 위반자의 골프라운드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도 수차례 위반자 명의로 골프예약이 있었고,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하였는데, 이 사건 위반일시에는 예약이 취소되지 않은 점, ⑤ ○○○공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포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징계처분을 하였고, 위반자는 이에 불복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⑥ 이 법원이 위반자에게 예약을 부탁한 지인들의 명단과 확인서 제출을 석명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지인들의 운동예약을 대신한 것이라면 휴무일인 각 위반일시에 골프장을 방문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에 관한 합리적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등 위반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는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이 사건 통보된 위반 행위 일시에 무료골프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대를 제공한 업체와의 직무관련성이 높은 점,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된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수수한 향응 가액, 위반자의 근무경력, 위반행위의 태양, 동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과태료 금액을 1,32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6.

2. 관련 판례

⑫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18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에게 각 과태료 3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B(주) 현장대리인 A는 2017. 11. 19. 직무관련자인 ○○○공단 C과 함께 골프행위를 하면서 C의 골프채 대여비 15,000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주)은 위 A의 사용인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8.

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정

사 건 2018과104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11. 30.(목)에 B에서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인 ○○○공사 직원(C)에게 본인의 회원권 혜택을 통해 총 33,350원(그린피20% 할인: 13,750원, 카트비 무료: 20,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6.

2. 관련 판례

⑭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16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11. 30. B에서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인 C D(주) 대표의 회원권 혜택을 통해 총 33,350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8.

❖ **향응 · 접대 관련 판례**

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사 건 2017과 118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3. 14.부터 2017. 7. 30.까지 B으로, 2017. 7. 31.부터 현재까지 C으로 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B으로 근무하였던 2016. 10. 20.부터 2017. 7. 27.까지 부하 직원인 D 등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713,900원 상당의 향응(이하 '이 사건 향응'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2. 관련 판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판단

가. 과태료 부과여부

-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B의 지위에 있었고, 그 부하직원인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위반자와 위 부하직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 2) 위반자는 자신에게 이 사건 향응을 제공한 사람 중 E에게 2016. 10. 26.부터 2017. 7. 9.까지 합계 74,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였고,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향응 액수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는 그 문언상 수수한 금품등 자체를 반환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반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 그 밖에 위반자가 이를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9.

② 춘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들을 각 과태료 7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은 ○○○대학교 C지역대학 시설관리 담당자(학사 7급)이고, 위반자 B는 위 대학의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위 대학에서 근무한 사실, 위반자 B는 2017년 4월 중순경 원주시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직무관련자인 위반자 A에게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2항,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3.

③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식회사

주 문 위반자들에게 각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C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관리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인 위반자 B 주식회사(이하 ‘위반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위반자 A가 2017. 10. 7.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등에서 ○○○고용노동청 F지청장이었던 G에게 305,500원 상당의 향응(식사, 주류)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판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반자 회사의 대표자인 위반자 A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금품등의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자 회사가 위반자 A의 위와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이는 위반자들에게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반자 A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제공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들에게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각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26.

④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49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주 문 2018. 10. 30.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구 B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 지정된 사실, 위반자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인 C는 2018. 3. 14.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고용노동청 F지청장이었던 G에게 300,000원 상당의 향응(주류, 성접대)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판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반자의 종업원인 C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달리 위반자가 종업원인 C의 위와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이는 위반자 회사에게 청탁금지법 제24조,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C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제공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청탁금지법 제24조,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2.

⑤ 부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1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95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고용노동청 B지청 C과에서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11. 13. 19:00경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D식당에서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E 소속 안전팀장 F으로부터 66,750원의 향응(식사) 수수를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195,28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0.

⑥ 인천지방법원 결정

- 사 건** 2017과 9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위반자는 ○○○ 신축공사 ○○○의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는 ○○○에 근무하면서 위 공사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다.
- 나. 위반자는 2017. 8. 16. 19:00경 ○○○에 있는 ○○○ 일식집에서 ○○○에게 술과 음식 등 60,500원 상당을, 8. 17. 00:00경 ○○○라는 술집에서 양주 등 56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 다. 위반자는 또한 2017. 8. 31. 19:00경 ○○○에 있는 ○○○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등 98,000원 상당을, 같은 날 22:02경 위 ○○○에서 양주 등 56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직무관련자인 ○○○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 및 위반 경위, 위반 횟수 등을 모두 참작하여 과태료액을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6.

⑦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경찰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자로서 2017. 1. 5. 수원시 C 소재 'D 식당', 'E주점'에서 B경찰서 경리계장 경위 F에게 총 664,600원 상당의 음식물, 주류 등을 접대한 사실이 인정 된다³⁾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664,60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위 F에게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고, 또한 부정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과 제5항은 직무와 관련되는 이상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여 부정한 청탁에 나아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위반자와 공직자의 관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위반자가 B경찰서 G과출소장 경감 H에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는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위반사실에서 제외한다.

2. 관련 판례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3.

❖ 기타 판례

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위반자는 ○○○시청 ○○○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 1.부터 2018. 1. 7.까지 ○○○시 ○○○의 직책을 담당하였다.
- 나. 위반자는 ○○○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경 하나 ○○○을 운영하는 ○○○를 소개받아 ○○○에게 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곰나루관광단지 등 주변 환경 정비 용역을 맡기게 되었고, ○○○는 2017. 9. 12.부터 2017. 9. 15.까지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
- 다. 위반자는 2017. 9. 15.경 ○○○에게 충남 부여군 ○○○에 위치한 위반자 종중의 묘를 별초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7. 9. 16. 인부 2명(○○○,○○○)으로 하여금 약 3시간가량 위 종중의 묘를 별초하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 한편 위반자는 ○○○시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인부임 기준액 75,000원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예산인부임 기준에 맞추어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용역기간을 2017. 9. 11.부터 2017. 9. 20.까지로 기재하여 인부임 지급결의 문서를 기안하였는데, ○○○와 위반자는 이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위반자가 2017. 9. 16. 인부 2명으로 하여금 종중의 묘를 별초하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서장은 2018.

2. 관련 판례

3. 14.경 이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에 위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 마. ○○○시장은 ○○○경찰서로부터 위반자의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8. 3. 28.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도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을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시 ○○○으로 근무하며 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곰나루관광단지 등 주변 환경정비 용역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가 관리하는 인부 2명이 약 3시간가량 위반자 중중의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위반자에게 인부 2명분의 1/2일

인부임인 15만 원(= 1/2일 인부임 75,000원 × 2인)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위반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에게 종종 묘의 별초를 요청하면서 인부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바쁜 업무와 병원치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깨닫고 바로 지급하였으므로, 위반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으려는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반자는 ○○○에게 1일간 종종 묘를 별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통상적으로 예초작업과 같은 용역의 경우 인부의 노임 지급은 용역이 종료됨과 동시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반자는 2017. 9. 16. 인부 2명이 종종묘의 묘를 별초하는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별초가 끝날 때까지 이를 관리·감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할 노임을 준비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공나루관광단지 등 주변 환경정비 용역과 관련된 용역대금이 모두 지급 될 때까지도 위 별초와 관련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4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위 위반사실이 밝혀지자 비로소 인부임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의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변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위반자가 받은 금품등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반자가 위반사실이 밝혀진 이후 인부 2인에게 인부임 상당액인 75,000원씩을 각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수령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3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2. 관련 판례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5.

②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509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위반자는 2017. 4. 5. 수학여행위탁여행사에 제주도 수학여행(2017. 4. 25. ~ 4. 28. 예정)의 사전답사 일정(2017. 4. 6. ~ 4. 8.)을 전달하였고, 그해 4. 6. 수학여행시 숙박 예정인 제주도에 있는 C에서 객실(1일 숙박비용 150,000원)을 제공받아 숙박을 한 다음, 다음날인 4. 7. 퇴실하면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교원인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50,000원 상당의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았고,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자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7.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1 규정 내용
- 2 관련 판례

1

| 규정 내용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수 금지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과 관계 없이 60만원 초과 불가	제한 없음

❖ 초과 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이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 벌칙

- 초과 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2

| 관련 판례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 160 청탁금지법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11. 13.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자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에 초과 사례금 400,000원을 모두 반납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10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6.

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사 건 2017과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공사의 직원인 위반자가 별표 기재와 같이 외부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10조 제5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6.

③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 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66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2.부터 같은 해 8.까지 외부강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일일 최고금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그 합계 금액은 66만 원 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8. 1. 17. 대통령령 제2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 한다(개정 시행령 조항 중 외부강사의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본 건 위반행위의 경위, 나중에 위 금액을 반환한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금액을 결정한다.

2018. 9. 13.

④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4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9. 28. 이후부터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1회당 60만원씩 29회에 걸쳐 1,740만원을 초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0.

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사 건 2018과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11. 13. 외부강의를 하면서 최고금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자가 나중에 위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10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7.



국민권익위원회